

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선	기관의 장
람	

제4호(호외) 2022. 1. 27.(목)

**공 고**

광양시 공고 제2022-192호 광양시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입법예고 ..... 1

회										
람										

▶ 발행 : 광양시      ▶ 편집 : 홍보소통실 (☎ 797-2323, 행정2713)



## 광양시 공고 제2022-192호

「광양시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「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입법취지 및 주요 개정사항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2년 1월 27일

광양시장

1. **조례안명** : 광양시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2. 제안이유

- 민간 남북교류 협력사업 지원을 위해 전남 시장군수협의회 합의로 2003년 4월 설립된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협의회가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로 명칭이 변경됨
- 이에 따라 명칭 변경된 법인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 제명 및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(제명 변경) 제명에 사용되는 단체 명칭을 표와 같이 변경

구 분	제 명	비 고
현 행	광양시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	
변 경	광양시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	

## ○ (본문 개정)

- 제1조, 제2조의 “전남남북교류협의회” 를 “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” 로 변경
- 제3조, 제5조의 “협의회” 를 “센터” 로 변경

## 4. 개정조례안 : 별첨

## 5. 입법예고기간 : 2022. 1. 27. ~ 2022. 2. 16.(21일간)

## 6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6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본 개정안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광양시 총무과(전화 : 061-797-2719)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가. 제출서식 : 붙임 참고

나. 제출방법 : 일반우편, 전자우편 또는 팩스

다. 제출하실 곳

- 일반우편 : 광양시 시청로 33(중동), 광양시청 총무과
- 전자우편 : khk5357@korea.kr
- 팩 스 : 061-797-2579

붙임 광양시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광양시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광양시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명 “광양시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”를 “광양시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전남남북교류협의회”를 “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남북교류·협력사업과 전남남북교류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”를 “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에서 추진하는”으로, “경비를 지원”을 “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출연·지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협의회”를 “센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인정되는”을 “인정하는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협의회”를 “센터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협의회의”를 “센터의”로, “협의회에”를 “센터에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u>광양시 전남남북교류협의회</u> <u>지원에 관한 조례</u>	<u>광양시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</u> <u>지원에 관한 조례</u>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차원의 남북교류·협력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설립된 <u>전남남북교류협의회</u>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재원) 광양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<u>남북교류·협력사업과 전남남북교류협의회</u>(이하 “<u>협회</u>”라 한다)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<u>경비를 지원</u>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생략)</li> <li>2. <u>협회의 운영비</u></li> <li>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</li> </ol> <p>제3조(업무의 위탁) ① 시장은 광양시의 남북교류·협력 사업을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전남남북교류 평화센터</u>----- -----.</p> <p>제2조(재원) ----- ----- <u>전남남북교류 평화센터</u>(이하 “<u>센터</u>”라 한다) 에서 추진하는 ----- ----- ----- <u>어느 하나</u> <u>에</u>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의 범위에서 <u>경비를 출연·지원</u>- 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2. <u>센터</u>-----</li> <li>3. ----- <u>인정하는</u> ----</li> </ol> <p>제3조(업무의 위탁) ① ----- -----</p>

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협의회에 남북교류·협력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5조(과건) 시장은 협의회의 목적달성과 시의 남북교류·협력사업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파견할 수 있다.

-----  
----- 센터-----  
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5조(과건) ----- 센터의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 센터에 -----.